

# 제 안 설 명 서

[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(안)]

영 주 시

## 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167

제출일자 : 2000. // .  
제출자 : 영 주 시 장

### 1. 폐지이유

본 조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주요 내용이 농지개량계조직에 관한 것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(폐지 1995.12.29 법률제5077호)에 근거하고 있으나 새롭게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(제정1999.2.5. 법률제5759호)제43조에 의해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 함.

### 3. 폐지조례(안) : 덧붙임

### 4. 참고자료

- 관련법령 (발췌) 1부

**영주시농지계량조합구역외농지기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(안)**

영주시농지계량조합구역외농지기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 법령(발췌)

### 【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】

- 제43조(수리계) ① 시·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·운영하고 농업기반조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수리계는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④ 수리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납부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·군수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·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·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## 의 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의 안

- 의안번호 : 제167호
- 의 안 명 : 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- 해당부서 : 산업건설국 건설과

### 2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주요 내용이 농지개량계조직에 관한 것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(폐지 1995. 12. 29 법률 제5077호)에 근거하고 있으나, 새로이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(제정 1999. 2. 5 법률 제5759호) 제43조에 의해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함.

### 4. 검토의견

본 폐지조례(안)을 검토한 바

- 현행조례는 당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제정·운영되었으나 동법이 폐지('95. 12. 29)되었고,
- 새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는 주요 내용인 농지개량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2000. 12.

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